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6.17(화)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6. 20(금)

다. 상정일자 : 2014. 6. 20(금)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는 평창군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초소설치,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초소 수리비, 순찰차량 구입비, 유지관리비,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 등이며

- 현재 8개 읍·면 10개 대(평창, 남부,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오대산, 대관령)에 400명이 활동하는 자율방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 자율방법대 운영지원 86,560천원
 - 대원 피복비 30,000천원
 - 초소 신축 및 정비 170,000천원 등이 편성됨.

- 『평창군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 2002. 6. 4제정』,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2004. 1. 3 제정』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특히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0명이상 회원 가입한 봉사활동단체 지원을 위해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10.4일 제정한 바도 있으므로 단체명의의 지원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평창군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방법의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연합대와 연합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범대에 적용한다.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③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범위) 읍·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지구단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초소 수리비 등
2.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체육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4. 방범대의 활동 중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